

美NSF 「제한대상기관과의 공동연구 금지 (DCL, NSF 26-022)」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연구보안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미국립과학재단(NSF)은 2026년 7월 8일자 Dear Colleague Letter(DCL, NSF 26-022)를 통해 기존의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중심 방식에서 제한대상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비 집행을 '전면 금지(Prohibition)' 하는 신규 연구보안 정책을 사전 예고
- 정책 정합성 및 통제 강화: 앞선 OMB 개정안의 우려대상 해외 공동연구 제한(2 CFR 200.220) 및 국방부(DoW) 등 연방기관 간 제한대상 대응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NSF 지원 과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적용 범위 및 제출 시 인증: 제한대상 목록(Appendix A)에 명시된 기관 및 소속 직원은 연구비 집행, 검직·직위 보유, 과제 수행 전 기간에 걸친 공동연구가 금지
- 한국 R&D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전략기술 분야 사후 관리에서 사전 차단 중심의 연구보안 기준 정립, 다부처 관련 제재 및 수출통제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 필요

주요 출처 <https://www.nsf.gov/funding/information/dcl-prohibition-collaborations-entities-us-prohibited-party>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미국 정부는 제한대상 목록 기관의 행위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이익상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
- NSF는 이들 기관이 관여하는 과제에 대해 기존 위험완화(Risk Mitigation) 조치만으로는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 미 국방부(Department of War) 등 주요 연방기관의 제한대상 목록 대응 방식과 정합화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범정부적 정책 일관성 제고 필요성 인식

나. 정책 목적

- (연구보안) NSF 지원 연구 자산 및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 (일관성) 범부처 차원의 제한대상 대응 가이드라인 기준 단일화 및 규정 구속력 강화
- (사전 예고) 2027 회계연도(FY2027) 「연구비 지원 지침 초안(Draft Guidance on Financial Assistance)」 발효에 앞서 기관과 연구자에게 유예 및 준비 기간 부여

2. 주요 내용

가. 금지 범위

- 연구비 집행 금지: 제한대상기관과의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랜트, 수탁 계약, 기타 거래 및 지원 사업에 NSF 예산 집행을 전면 금지하며, 해당 기관 소속 직원에게도 동일 적용
- 핵심연구자(Senior/Key Personnel) 제한: 주요·핵심 인력은 제한대상기관에서의 겸직, 직위 보유, 연구지원 수령이 금지
- 공동연구 제한: 과제 수행 전 기간 동안 제한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과의 모든 형태의 공동연구 활동이 차단

나. 이행 및 인증 체계

- 제출 시점 인증: 제안서 제출 시 기관 공식대표(AOR)와 주요·핵심 인력이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사전 인증해야 함
- 기관 책임 명확화: 소속 연구기관은 핵심 인력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연구비 집행 이전 단계에서 제한 대상 활동을 식별 및 조치 책임

다. 적용 대상 목록 (Appendix A)

- 별도의 신설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연방기관의 기존 제재, 수출통제, 연구보안 목록을 종합 적용

<표> Appendix A 제한대상 목록 구성 및 주요 내용

소관 기관	대상 목록	주요 내용
국방부(DoW)	NDAА FY2021 §1260H	미국 내 활동 중국 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지정 목록
	NDAА FY2019 §1286	학술 연구보안 대상 - 해외 인재유치 프로그램 등 우려기관 관리 근거
상무부(DOC)	BIS Entity List	국가안보·외교정책 사유의 수출 허가 요건 부과 대상
	Military End-User(MEU)	군사 최종사용자로 지정된 수출통제 대상
	Denied Persons	수출 특권이 박탈된 개인 및 기관
재무부 (Treasury)	OFAC EO 14032 부속서	중국 군산복합체 기업(CMIC) - 증권 투자 금지 대상
	非SDN CMIC 목록	상장 증권 투자 제한 대상 기업
국무부(DOS)	Debarred Parties	국방교역(ITAR) 활동이 금지된 당사자
	비확산 제재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확산 연루 제재 대상
연방통신위원회 (FCC)	Covered List (§2 Secure Networks Act)	국가안보 위협 통신 장비 및 서비스 목록
국토안보부(DHS)	UFLPA Entity List	강제노동(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연계 기관
관세국경보호청 (CBP)	WRO · Findings	강제노동 생산 의심 물품의 수입 보류 및 판정

3. 한국 R&D 생태계에 주는 시사점

가. 제한대상 목록의 통합 관리 인프라 구축

- 국가 차원의 연구보안 통합 지원 포털 구축 및 수시 업데이트
- 제재 대상 해외 연구기관(자)를 원스톱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연구기관 내부통제 강화

- 연구비 집행 이후 적발 시 연구 중단 및 법적 리스크가 막대하므로, 제안서 제출 시점의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
- 각 연구기관에 연구 컴플라이언스 분야 R&D 매니지먼트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표준 SOP를 개발하여 보급